

## 변 론 재 개 신 청

사 건 2000고단000호 절도

피고인 0 0 0

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 한 증거를 확보하였는 바,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형사 ○ 단독 귀중

				· <b>₩</b>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05조	
신 청 인	<ul><li>법원(직권)</li><li>검사</li><li>· 피고인 또는 변호인</li></ul>	제출부수	신청서 1부	